

의안번호	2210767
의 퇴 인	전재수 의원
회 답 일	2025. 6. 19.
추계번호	25C3138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최대 위원 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,500만원(연평균 300만원) 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수 확대(안 제23조)	3	3	3	3	3	15	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 (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)	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(현행 25명 이내)	의무규정
2	안 제30조의3 (출생 장려의 날)	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3조 (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)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안 제30조의3 (출생 장려의 날)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수가 확대되고,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추진할 경우 회의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안 제30조의3에 따라 출생 장려의 날이 지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추진할지 여부와 그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, 본 추계서는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수 확대 시의 추가재정소요만 추계
-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의 경우, 신규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현재 해당 위원회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추계
 -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에 총 4회의 회의(본회의)를 개최하였고,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서¹⁾에 회의수당 단가가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
 - 매년 4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하고, 수당 단가는 15만원이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1) 2025년에는 해당 위원회 회의체 운영비가 예비비로 편성됨

- 추계결과,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의 최대 위원 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,500만원(연평균 300만원)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2]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위원 수	5	5	5	5	5	—	—
회의 횟수	4	4	4	4	4	—	—
회의수당 단가	0.15	0.15	0.15	0.15	0.15	—	—
추가재정소요	3	3	3	3	3	15	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